



2024.07 | 제 3호

##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규제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 ① 서론 • 4
-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6
- ③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8
- ④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11
- ⑤ 결언 • 26
- ⑥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1-2024) • 27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 28

-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8
- ②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34
- ③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 39
- ④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43
- ⑤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49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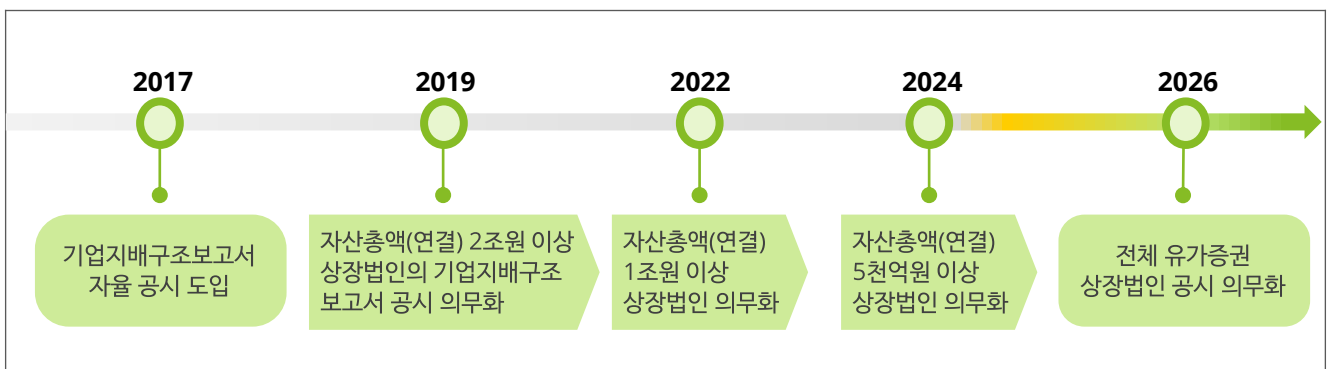
### 요약

- 올해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본고는 FY2023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공함
- 2024년 기준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 하락하였으며 추후 성실한 준수가 권고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이는 올해부터 보고서 공시의무 적용이 자산(연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평균 준수율이 낮아졌으며,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에서 준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배경

- 올해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2024.05.까지 제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의무공시는 단계적으로 2024년 현재 자산(연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임

<그림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일정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1. 서론

- 본고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실행이 장려되는 FY2023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sup>1)</sup>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관련 아래의 기본 공시 정보항목을 DB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센터 고유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 주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② 전자투표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이사회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감사기구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 본고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공시된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조사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을 담음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작년 10월에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3차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며 하기의 6가지 항목(<표1> 참조)에 대한 공시 권고가 추가됨 <sup>2), 3)</sup>
  - 이번 개정은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함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2023.10)

구분	내용
<b>신규 핵심지표</b>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절차 개선방안(23.01.) 후속 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li> <li>•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li> </ul>
소액주주, 기관 투자자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이 소액주주, 기관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li> <li>•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li> </ul>
자본조달 현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li> </ul>
<b>신규 핵심지표</b> 이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성·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 강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 설명</li> </ul>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li> </ul>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li> </ul>

-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확정된 15개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규 핵심지표 준수사항으로 지정됨(<표 2> 참조)
  -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여 일부 핵심지표가 정비됨
- 개정 전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항목을 단순 기술하는 방식인 반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각 원칙 '준수 여부'를 100자 이내로 간략 기술하고 세부원칙 준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부정책 시행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보고서 형식체계가 개편됨

2)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3

3)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개정

구분	2차 개정 가이드라인(2022.03)		3차 개정 가이드라인(2023.10)	개정사항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변동없음
	② 전자투표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변동없음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변동없음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신규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이사회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순서변경: ④→⑤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순서변경: ⑤→⑥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sup>4)</sup>	순서변경: ⑥→⑦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sup>5)</sup>	순서변경: ⑦→⑧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⑨ 집중투표제 채택	순서변경: ⑧→⑨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순서변경: ⑨→⑩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감사기구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신규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지원 조직)의 설치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지원 조직)의 설치	변동없음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변동없음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변동없음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변동없음

4) 위험관리 항목이 추가됨

5) 내용이 구체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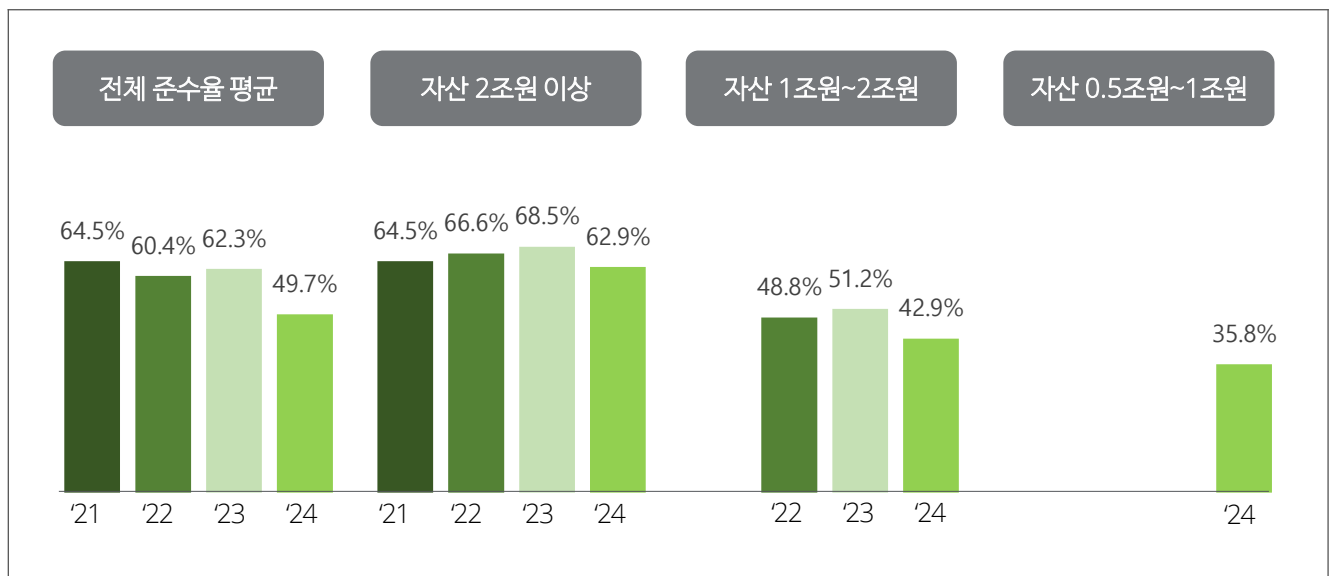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4년 기준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 하락하였으며 추후 성실한 준수가 권고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62.9%로 전기대비 5.6%p 하락함
  -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42.9%로 전기대비 8.3%p 하락함
  - 올해부터 공시의무 대상이 된 자산 5천억원~1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35.8%로 나타남
-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가 자산(연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평균 준수율이 낮아졌으며, 자산 1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에서 준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비율 평균<sup>6)</sup>



6)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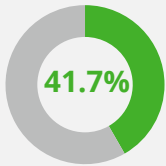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4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4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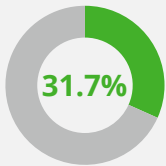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45% 미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임<sup>7)</sup>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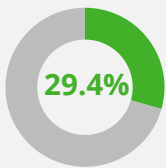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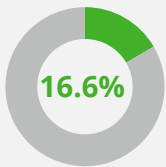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준수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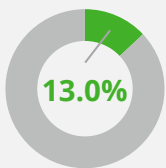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하고 있음

#### ④ (신설)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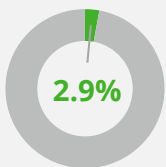
• 신규 핵심지표로 지정되어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고되지만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준수율 현황으로 인용되고 있음

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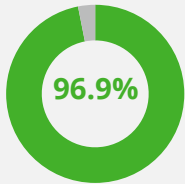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4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7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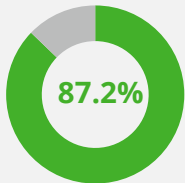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하기의 4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70% 이상으로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차원으로 보여짐<sup>8)</sup>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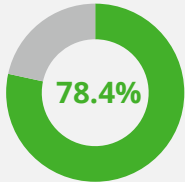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 및 실행되는 상황으로 이해됨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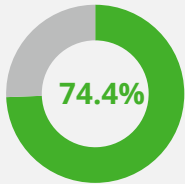
- 상법(제542의11)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 구분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기업은 최소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재직중임을 확인함

#### ② 전자투표 실시



-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 내부통제정책에는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 포함이 요구되며 주요 미준수 사유로 위험관리 관련 명문화된 정책 마련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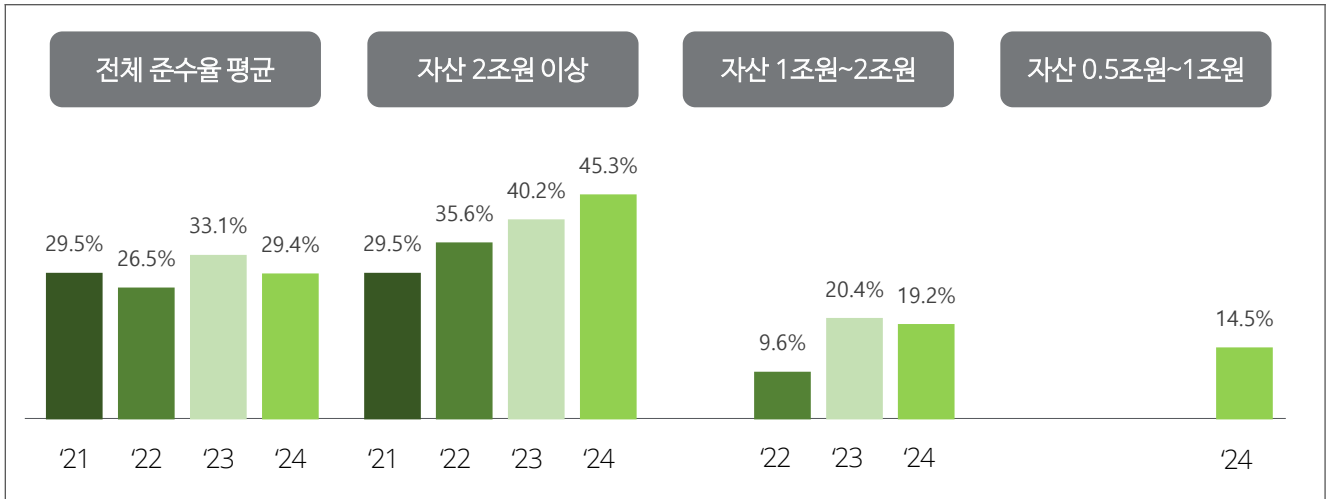
8)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그림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sup>9)</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29.4%로 전기대비 3.7%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5.3%로 전기대비 5.1%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9.2%로 전기대비 1.2%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4.5%로 조사됨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하고 있음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①)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나. 회사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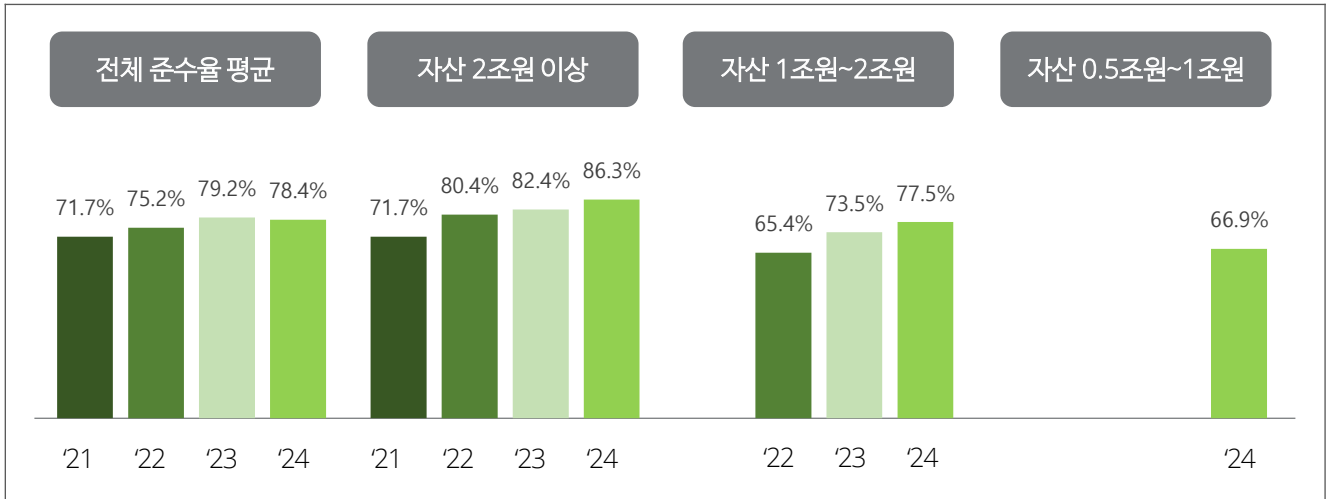
9)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그림 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sup>10)</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8.4%로 전기대비 0.8%p 하락함
  - 자산 200억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6.3%로 전기대비 3.9%p 상승함
  -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7.5%로 전기대비 4.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00억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6.9%임
- 2020년 개정된 상법<sup>11)</sup>에서는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음
-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②)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 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0)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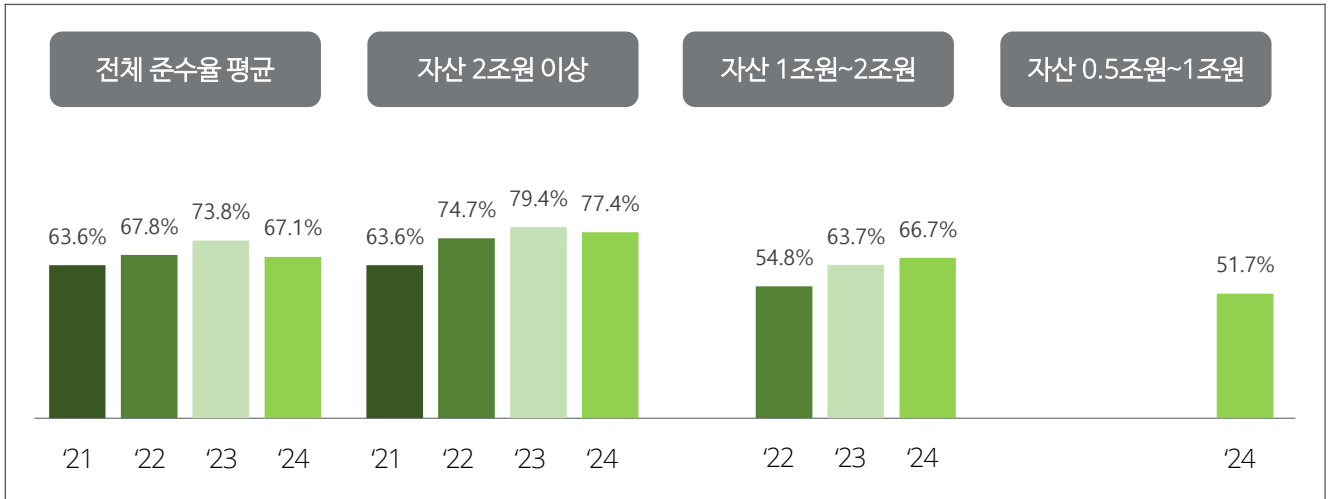
11) 상법 제368의 4에서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그림 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sup>12)</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67.1%로 전기대비 6.7%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7.4%로 전기대비 2.0%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6.7%로 전기대비 3.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7%임
- 주주총회 집중일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하며,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표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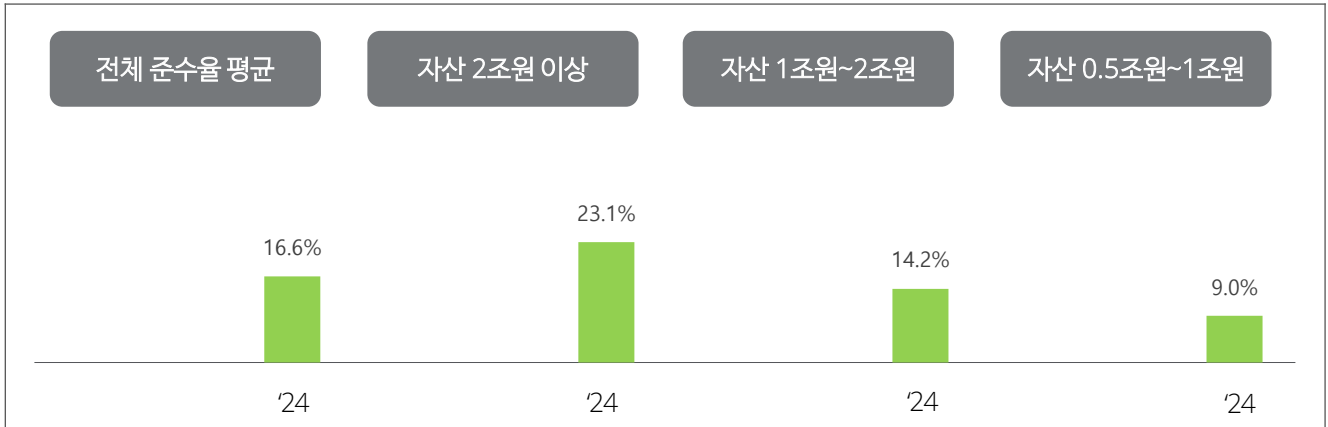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 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2)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그림 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sup>13)</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16.6%임
  - 자산 200억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3.1%임
  - 자산 100억 이상 200억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4.2%임
  - 자산 5천억원 이상 100억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0%임
- 신규 핵심지표로 지정되어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lt;표 6&gt;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amp; (세부원칙 1-④)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상장회사협의회 의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실시 여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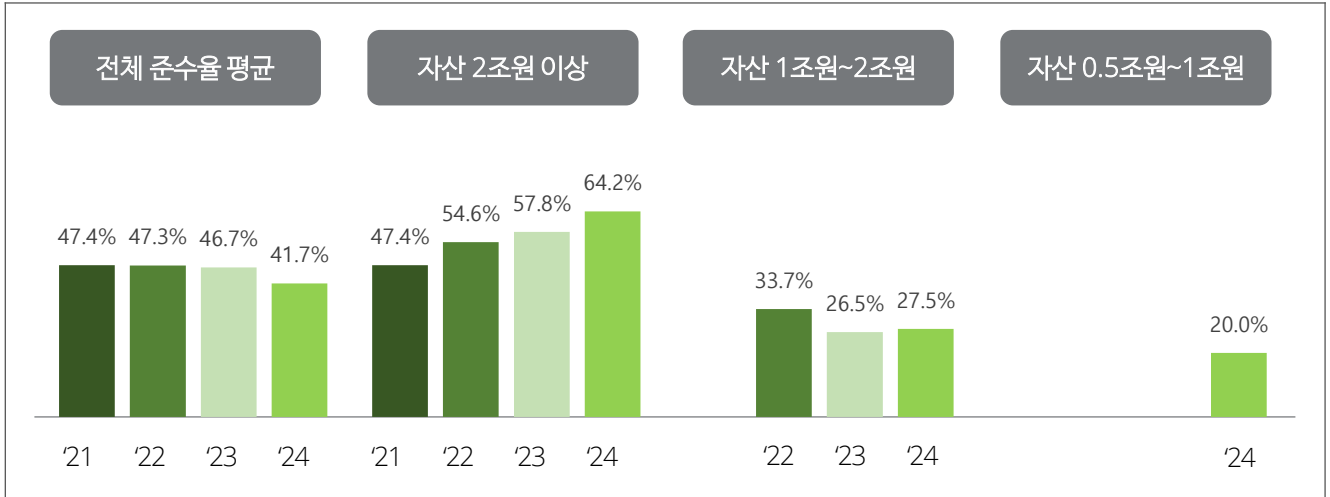
1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그림 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sup>14)</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1.7%로 전기대비 5.0%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4.2%로 전기대비 6.4%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7.5%로 전기대비 1.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0.0%로 나타남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⑤)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 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1) 배당관련 사항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나.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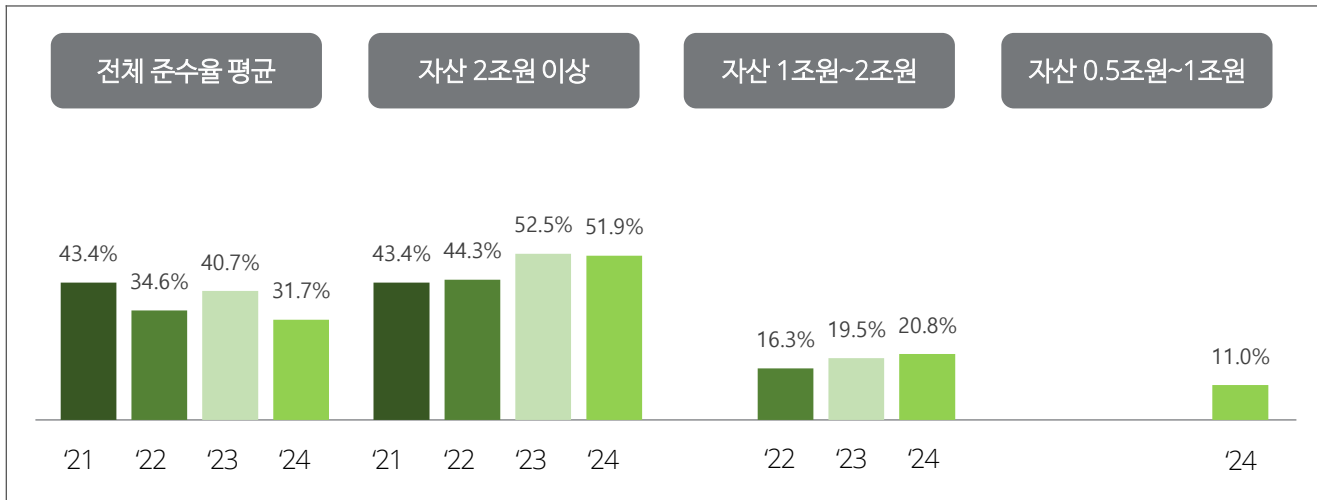
14)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그림 8>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sup>15)</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1.7%로 전기대비 9.0%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9%로 전기대비 0.6%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0.8%로 전기대비 1.3%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1%로 조사됨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준수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표 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②)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연임 정책 포함)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 (2)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 (3)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15)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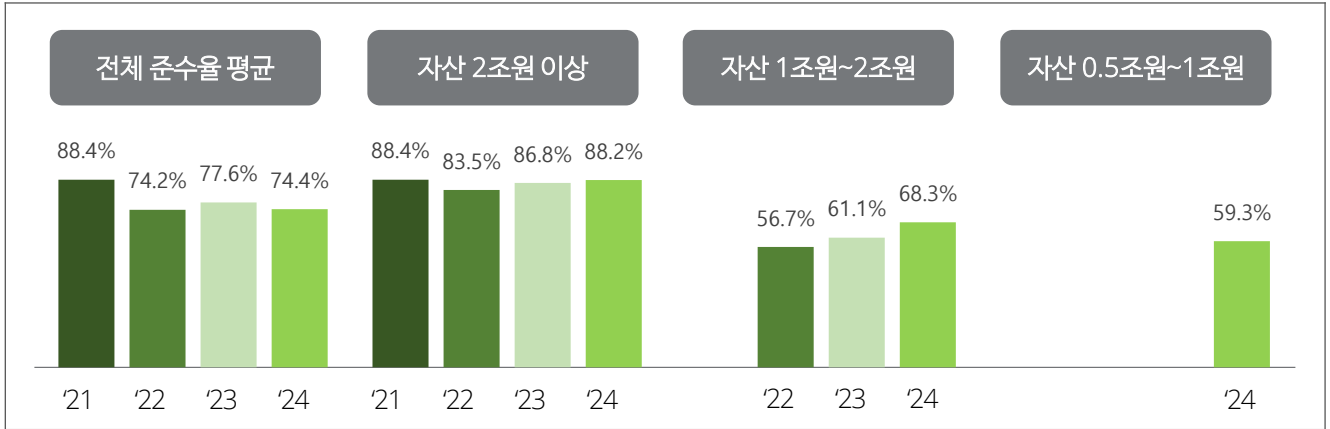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그림 9>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sup>16)</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4.4%로 전기대비 3.2%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8.2%로 전기대비 1.4%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8.3%로 전기대비 7.2%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9.3%로 나타남
- 상장법인은 최근의 자금횡령방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이행 등 관련 사안 대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내부통제정책에는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 포함이 요구되며 주요 미준수 사유로 위험관리 관련 명문화된 정책 마련이 포함됨

<표 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③)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내부통제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 (2)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 현황
    - (3)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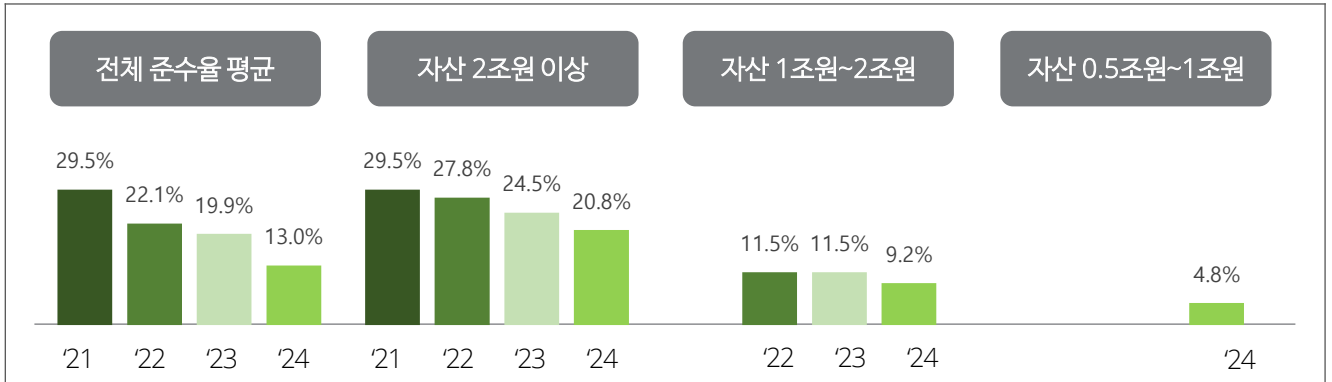
16)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그림 10>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sup>17)</sup>



-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립 관점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가 권고<sup>18)</sup>되는데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거나 사업전략에 보조를 맞춰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는지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임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이 권고되는데,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선임하여 의장에 준하는 권한을 기반으로 회의소집 권한을 갖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함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13.0%로 전기대비 6.9%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0.8%로 전기대비 3.7%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2%로 전기대비 2.3%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8%임
-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이며 보완책으로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있음

<표 1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①)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 (6) 선임(先任)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1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 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 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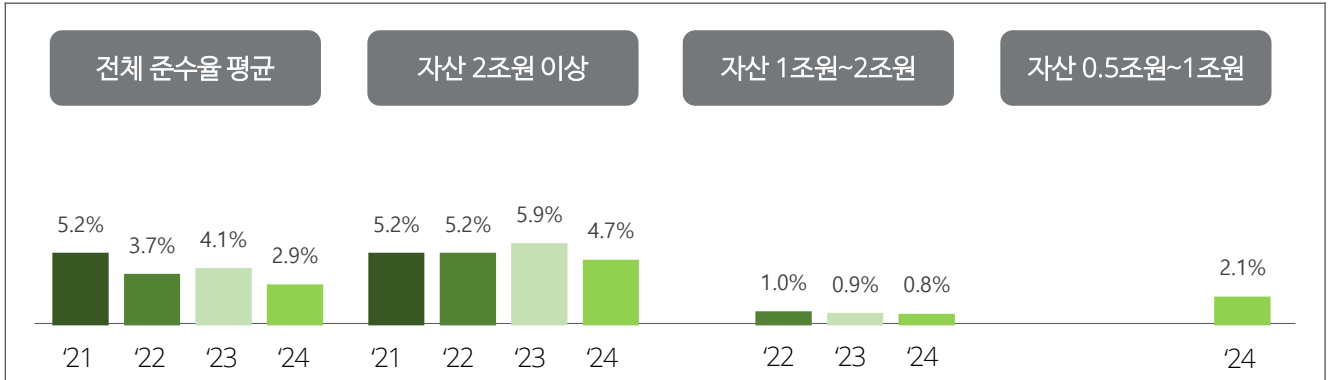
18) 지배구조 모범규준 II.5.1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

<그림 11>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sup>19)</sup>



- 집중투표제<sup>20)</sup>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중 가장 낮은 수준(2.9%)을 보여주고 있음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2.9%로 전기대비 1.2%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로 전기대비 1.2%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0.8%로 전기대비 0.1%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1%임
-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결의시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에 유리한 제도이며, 상기 지표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준수율 현황으로 인용되고 있음

<표 1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③)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9)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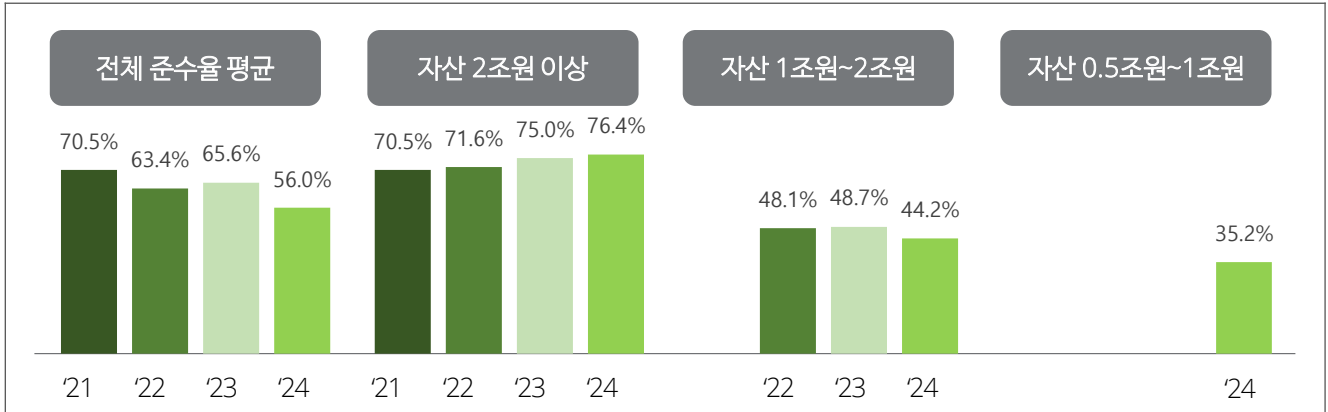
20) 상법 제382의2.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존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그림 12>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sup>21)</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6.0%로 전기대비 9.6%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6.4%로 전기대비 1.4%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4.2%로 전기대비 4.5%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5.2%임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준수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예시로는 법규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표 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④)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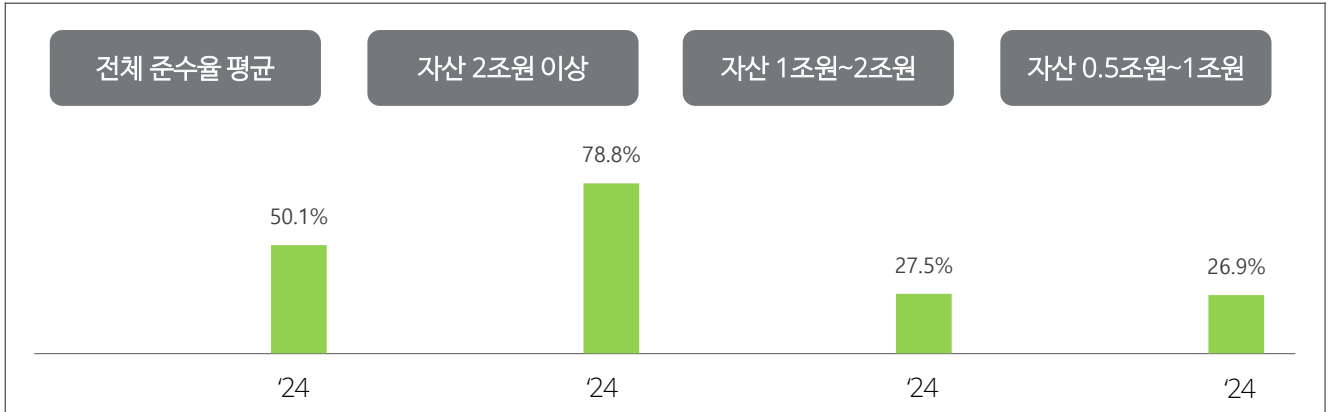
2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신규 핵심지표]

<그림 13>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신규 핵심지표] <sup>22)</sup>



- 올해 신규로 도입된 핵심지표로 여성 이사진 비중 확보에 대한 충실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0.1%로 조사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8.8%로 나타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7.5%임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6.9%로 나타남
- 자본시장법 상 법제화 되었음에도 별도 제재가 없는 현실로, 개별·별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일부는 단일성으로 이사회를 구성중이며 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표 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②)

- (핵심원칙 4)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 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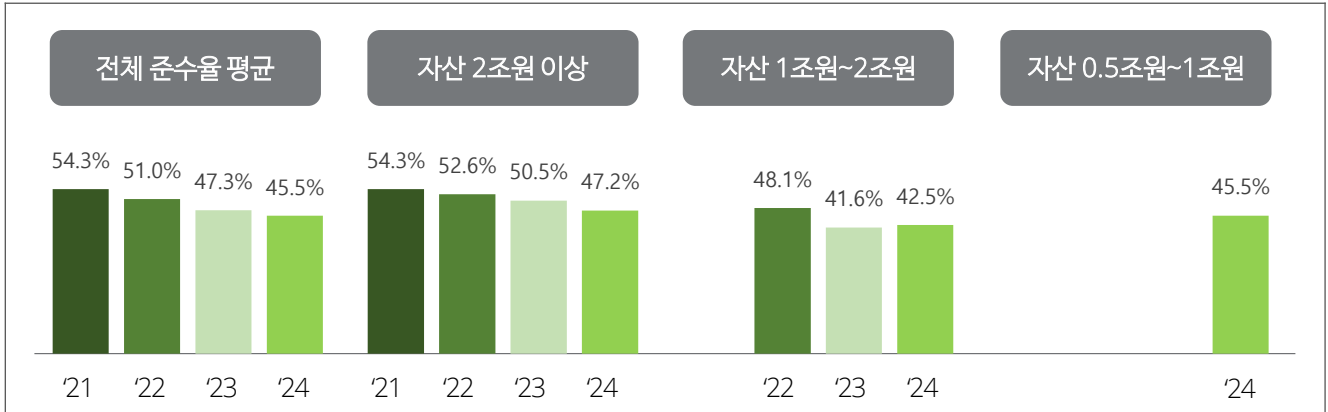
22)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그림 1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sup>23)</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5.5%로 전기대비 1.8%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2%로 전기대비 3.3%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2.5%로 전기대비 0.9%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5.5%임
-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책이 실행될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sup>24)</sup>
- 부서원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 등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동의권을 부여하여 경영진의 단독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준수율은 중간 수준임

<표 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2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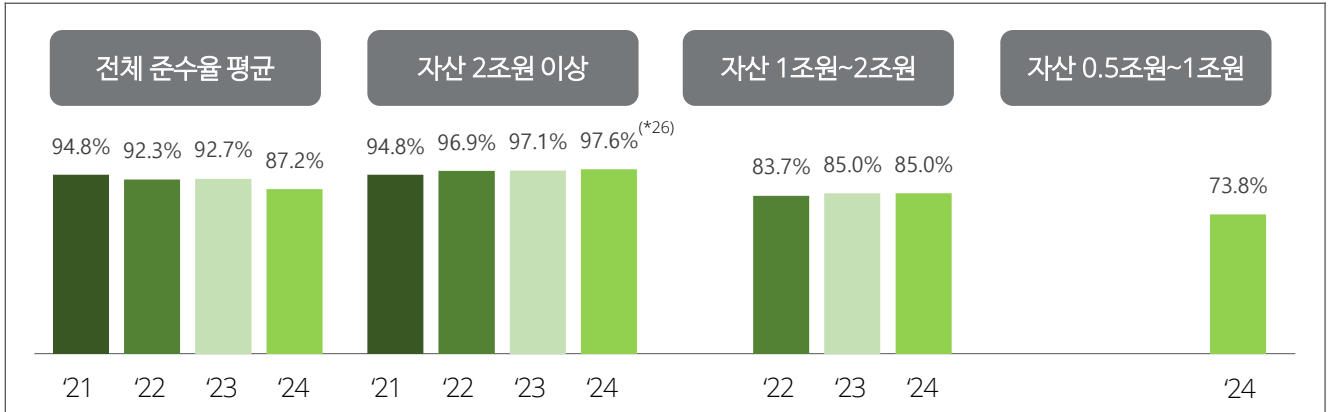
24)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확보 권장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그림 1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sup>25)</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87.2%로 전기대비 5.5%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7.6%로 전기대비 0.5%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5.0%로 전기와 동일한 수준임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3.8%임
- 상법(제542의11)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감사기구로 설치된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요건은 상법시행령(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sup>27)</sup>

<표 1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25)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6)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기업은 최소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재직중임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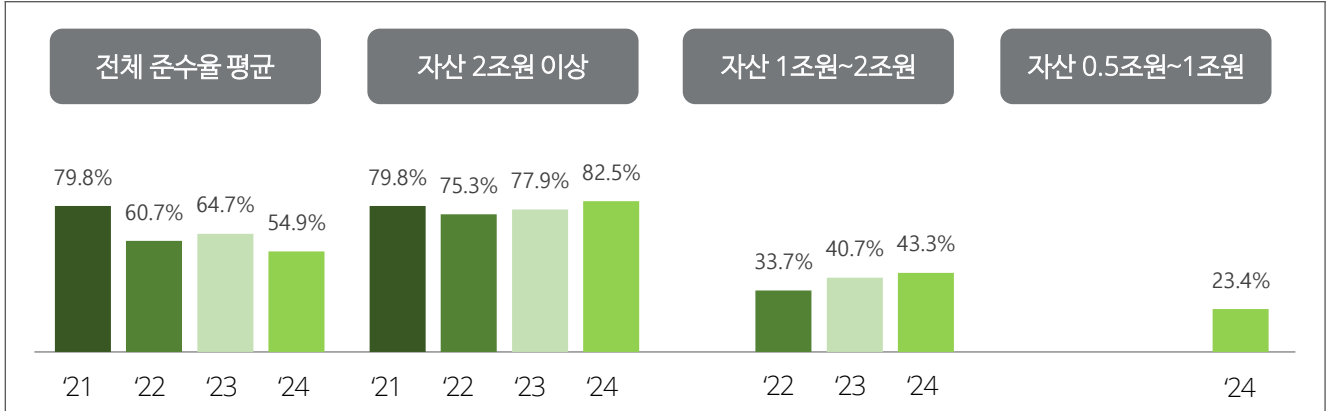
27) 감사 설치 기업의 다수가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함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그림 1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sup>28)</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4.9%로 전기대비 9.8%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2.5%로 전기대비 4.6%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3.3%로 전기대비 2.6%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3.4%임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sup>29)</sup>

<표 1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세부원칙 10 - ②)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10 - 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28)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9)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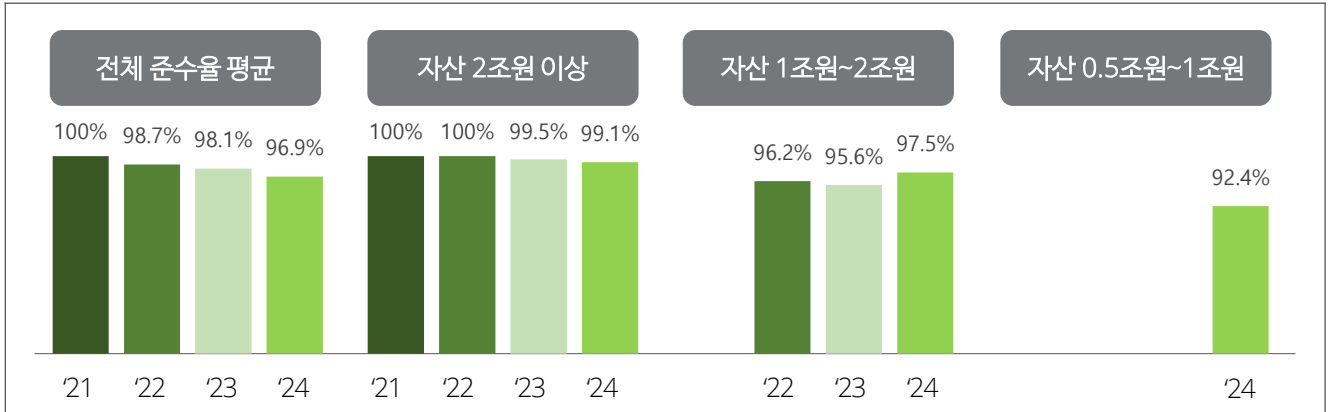


#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그림 1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sup>30)</sup>



- 2024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96.9%로 전기대비 1.2%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9.1%로 전기대비 0.4%p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7.5%로 전기대비 1.9%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2.4%임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 및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30)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5. 결론

---

### 결언

-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2024년 자산총액(연결)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여부 현황을 파악함
  - 개별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거버넌스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추후 ESG 경영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받는데 의의가 있음
-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6.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1-2024)

<표 1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sup>31)</sup>

구분	핵심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2조 이상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자산05조 원~1조원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5% 51사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29.4% 140사	45.3% 96사	19.2% 23사	14.5% 21사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79.2% 251사	82.4% 168사	73.5% 83사	78.4% 374사	86.3% 183사	77.5% 93사	66.9% 97사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6% 110사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73.8% 234사	79.4% 162사	63.7% 72사	67.1% 320사	77.4% 164사	66.7% 80사	51.7% 75사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16.6% 79사	23.1% 49사	14.2% 17사	9.0% 13사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4% 82사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41.7% 199사	64.2% 136사	27.5% 33사	20.0% 29사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3.4% 75사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31.7% 151사	51.9% 110사	20.8% 25사	11.0% 16사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위험관리 항목 추가	88.4% 153사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77.6% 246사	86.8% 177사	61.1% 69사	74.4% 355사	88.2% 187사	68.3% 82사	59.3% 86사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내용 구체화	29.5% 51사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13.0% 62사	20.8% 44사	9.2% 11사	4.8% 7사
	⑨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3.7% 11사	5.2% 10사	1.0% 1사	4.1% 13사	5.9% 12사	0.9% 1사	2.9% 14사	4.7% 10사	0.8% 1사	2.1% 3사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0.5% 122사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65.6% 208사	75.0% 153사	48.7% 55사	56.0% 267사	76.4% 162사	44.2% 53사	35.2% 51사
감사기구	⑩ 6년 초과장기재직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50.1% 239사	78.8% 167사	27.5% 33사	26.9% 39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168사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3% 94사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45.5% 217사	47.2% 100사	42.5% 51사	45.5% 66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4.8% 164사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87.2% 416사	97.6% 207사	85.0% 102사	73.8% 107사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79.8% 138사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64.7% 205사	77.9% 159사	40.7% 46사	54.9% 262사	82.5% 175사	43.3% 52사	23.4% 34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173사	98.7% 294사	100% 194사	96.2% 100사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96.9% 462사	99.1% 210사	97.5% 117사	92.4% 134사	
준수비율 평균		64.5%	60.4%	66.6%	48.8%	62.3%	68.5%	51.2%	49.7%	62.9%	42.9%	35.8%

3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up>1)</sup>

#### 요약

- 6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4.7.3.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추가하였음
-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 지침을 작업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임

#### 개정 배경

- '23.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4.1.2. 공포되어 7월 3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본건 개정 법률은 '23.6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sup>2)</sup>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책무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2월 13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으나, 5월 24일 해당 조항 중 일부를 다시 변경하여 재입법예고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위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5월 2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안 중 일부를 다시 수정하여 개정 예고하였으며,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1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 발표」, 2023.0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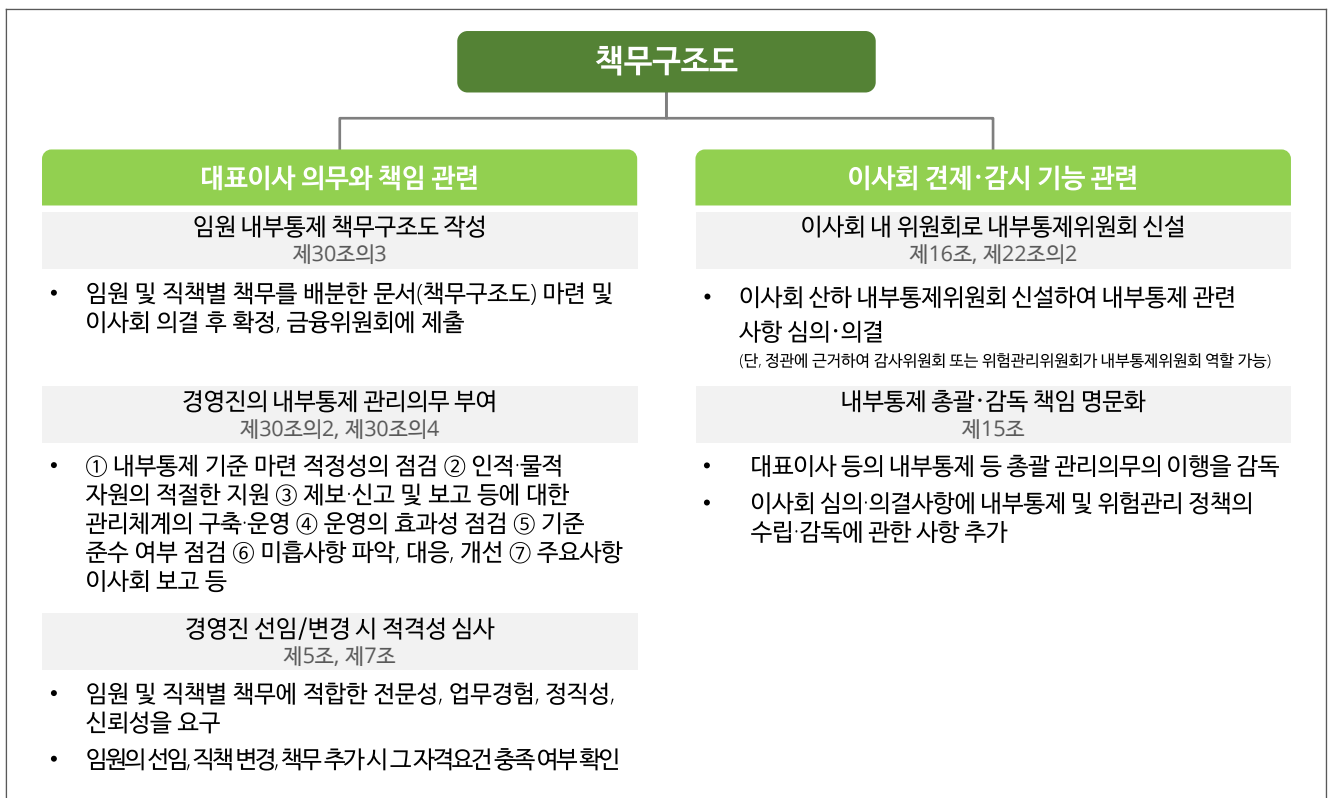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개정 내용

- 1)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
  -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sup>3)</sup>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함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 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

<그림 1> 책무구조도



3) 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표 1> 책무구조도 관련 규정 내용

구분	내용
책무 개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된 책무, ②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③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함</li> </ul>
책무배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사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li> <li>「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6월 말 금융위원회 상정 의결 예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li> </ul>

<표 2> 책무 업무 예시

법령 등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무구조도 마련·관리</li> <li>내부감사</li> <li>위험관리</li> <li>준법감시</li> <li>자금세탁방지</li> <li>내부회계관리</li> <li>정보보안</li> <li>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보호</li> <li>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지정 책임자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li> <li>예금 및 적금</li> <li>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li> <li>내국환 외국환</li> <li>투자매매</li> <li>집합투자</li> <li>투자자문 / 투자 일임 / 투자중개</li> <li>신탁</li> <li>보험상품개발</li> <li>보험계리</li> <li>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체결</li> <li>보험계약인수 / 보험계약관리</li> <li>보험금지급</li> <li>신용카드</li> <li>시설대여</li> <li>할부금융</li> <li>신기술사업금융</li> <li>전자금융</li> <li>혁신금융서비스</li> <li>본인신용정보관리</li> <li>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li> <li>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금융영업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운영</li> <li>인사</li> <li>보수</li> <li>고유자산 운용</li> <li>건전성 및 재무 관리</li> <li>공시</li> <li>업무의 위탁 및 수탁</li> <li>광고</li> <li>자회사 관리</li> <li>영업점 관리</li> <li>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li> <li>전산시스템 운영·관리</li> <li>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경영관리 관련 업무</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규율

□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함

- 법률시행일인 '24.7.3. 이후 2년까지('26.7.2. 까지) 제출
  -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
-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27.7.2. 까지) 제출

<표 3>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 운용재산 20조원 ↑ +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자산총액 5조원 ↓ / 운용재산 20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 □ 1단계('25.1.2. 까지) → □ 2단계('25.7.2. 까지) → □ 3단계('26.7.2. 까지) → □ 4단계('27.7.2. 까지)

□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됨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함
-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함

<표 4> 관리의무 규율 세부내용

구분	내용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li> <li>•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li> </ul>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li> <li>•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막기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li> </ul>

#### 향후 일정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sup>4)</sup>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호」, 2024.02.13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 중에 있음
  - 동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게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여부의 판단기준'등이 포함될 예정

### 시사점

-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위원회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되고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sup>1)</sup>

#### 요약

-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23.1.30.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24.6.4.~24.7.16.)
-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예정임

#### 검토 배경

- 자기주식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Treasury Stock)라고도 불리며 과거 자사주 취득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금지하였으나, 주주환원 등을 위해 '92년부터 상장사 중심으로 단계적 허용함
  - '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나 회사의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됨

<표 1> 자사주 취득 단계적 허용<sup>2)</sup>

구분	내용
1992년	• 간접취득 허용
1994년	•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직접취득 허용, 주식총수의 10% 이내
1998년	• 주식총수의 1/3 이내로 확대
1999년	• 주식총수 한도 삭제

1)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6.04

2) 금융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 2024.01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자사주 매입 소각에 소극적임에 따라 주주환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며, 오히려 기업들이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자사주마법: 인적분할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 →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 자사주맞교환: 자사주를 제3자 처분시 의결권 부활 →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

####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마법 차단) 등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 자사주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의 경우, 그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임
- 기업들은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수단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 아울러, 공시·상장심사 강화도 병행 추진하여, 임의적 자사주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임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추진 경과

<표 2>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3.6.5.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sup>3)</sup>
'24.1.17.	• 금융위원회 2024년 금융정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내용 포함 <sup>4)</sup>
'24.1.30.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및 논의 <sup>5)</sup>
'24.6.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sup>6)</sup>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함
  -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음
  -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3)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2024.06.05

4) 금융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 2024.01

5) 금융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24.01.30

6) 금융위원회, 「공고제2024-174호」, 2024.06.04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자사주의보유·처분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함

-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예: 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①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동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토록 하였음
- 또한, 규정 개정안은 ②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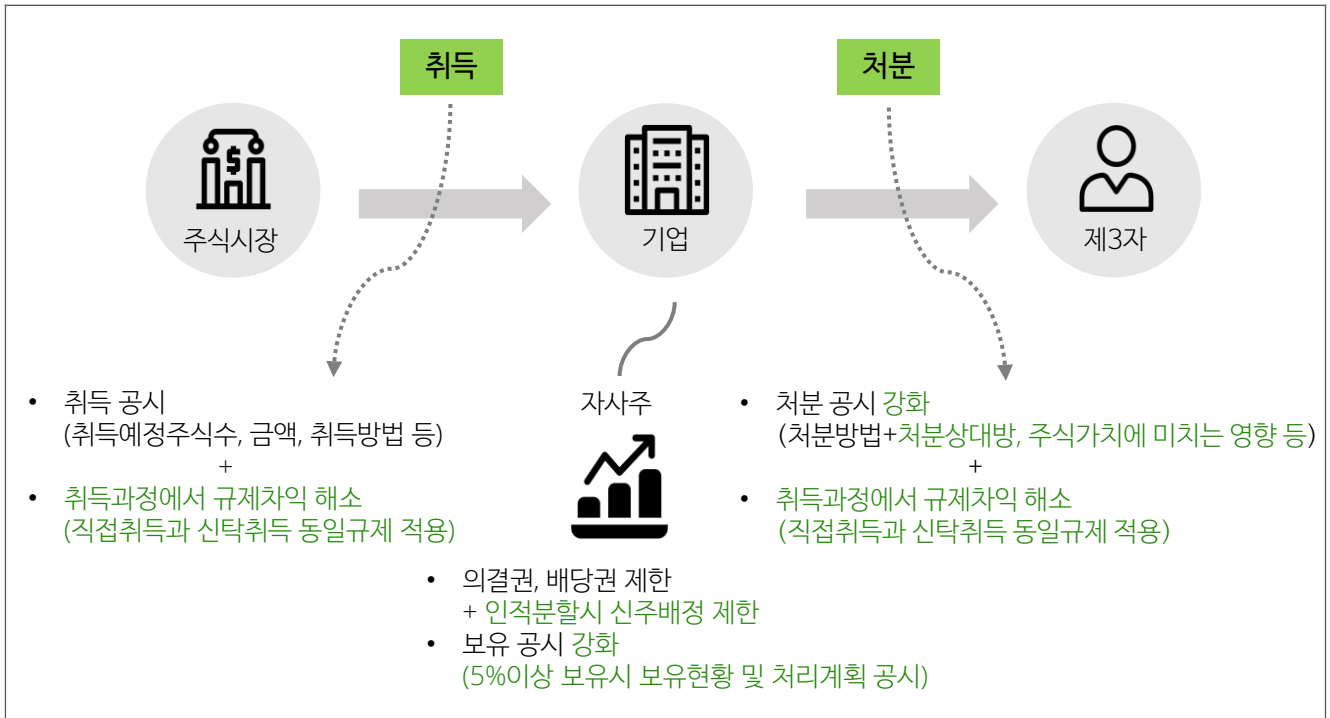
####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하였음

-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①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②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였음
-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음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림 1>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요 내용



###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6.4일부터 7.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

##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sup>1)</sup>

#### 요약

- '23.1.31. 금융위원회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배당절차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음
-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여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음
  -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함
-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표 1>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sup>2)</sup>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1) 금융감독원,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2024.06.03

2)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23.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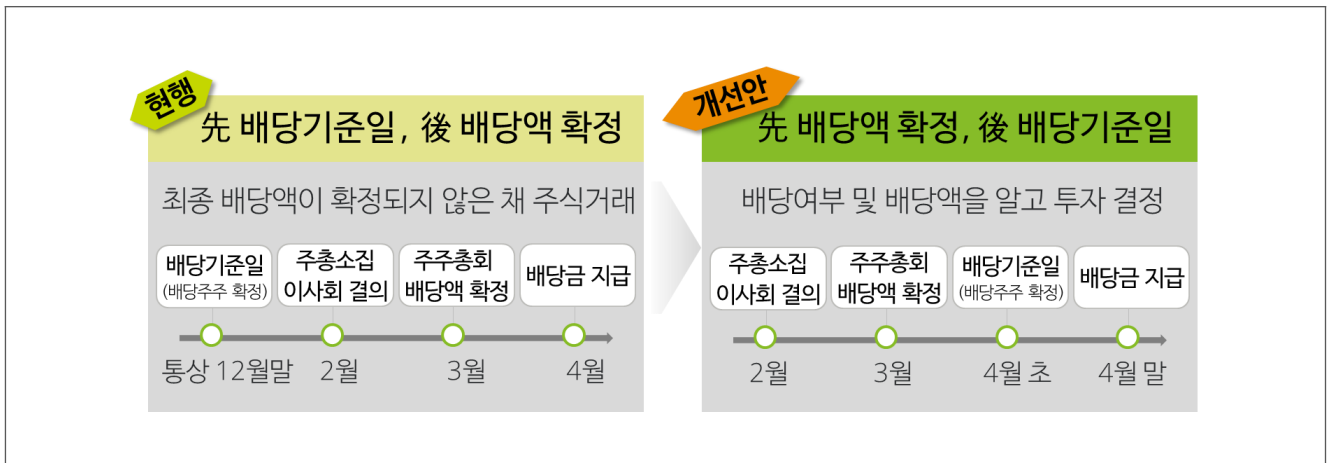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 간담회 개요

- '24.6.3.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월 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현행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
-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림 1>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요



#### 간담회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23.1.31.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강조함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 주요 과제 추진 경과

&lt;표 2&gt; 배당절차 개선 관련 주요 과제 추진 경과

구분	내용
표준정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정비</li> </ul>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회사의 정관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및 유튜브 "상장협 기업법제TV" 업로드</li> </ul>
안내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소와 연계하여 상장협·코스닥협 홈페이지 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개설</li> </ul>
가이드라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상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세부원칙 및 핵심지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원칙 1-4: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함</li> <li>'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O/X로 공시)를 핵심지표에 추가</li> </ul> </li> </ul>
공시우수법인 평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도 우수법인 선정시('24.2.)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평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우수법인 선정을 위한 평가시 배당절차 개선 법인에 가점 부여</li> </ul> </li> </ul>
세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배당절차(先배당기준일·後배당액결정)를 전제로 되어 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先배당액결정·後배당기준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을 산정하도록 개정</li> </ul> </li> </ul>
보도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2. 및 12월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 배포</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

-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하였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 향후 계획

-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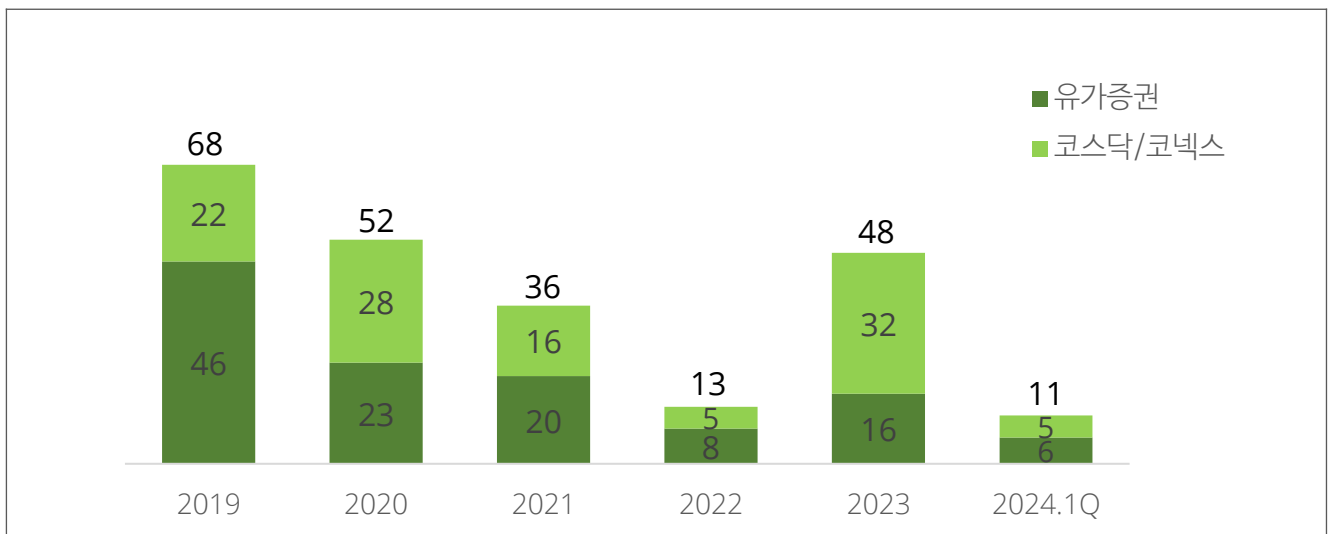
#### 요약

- 최근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FY2023부터 본격 감리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임

#### 추진 배경

-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11건의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한 회계감리 위반사례도 '21년 2건, '22년 7건, '23년 1건, '24년 4월 현재 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림 1>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



1) 금융감독원,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5.23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한 횡령·배임 발생 공시건수 기준이며 기재정정건은 제외함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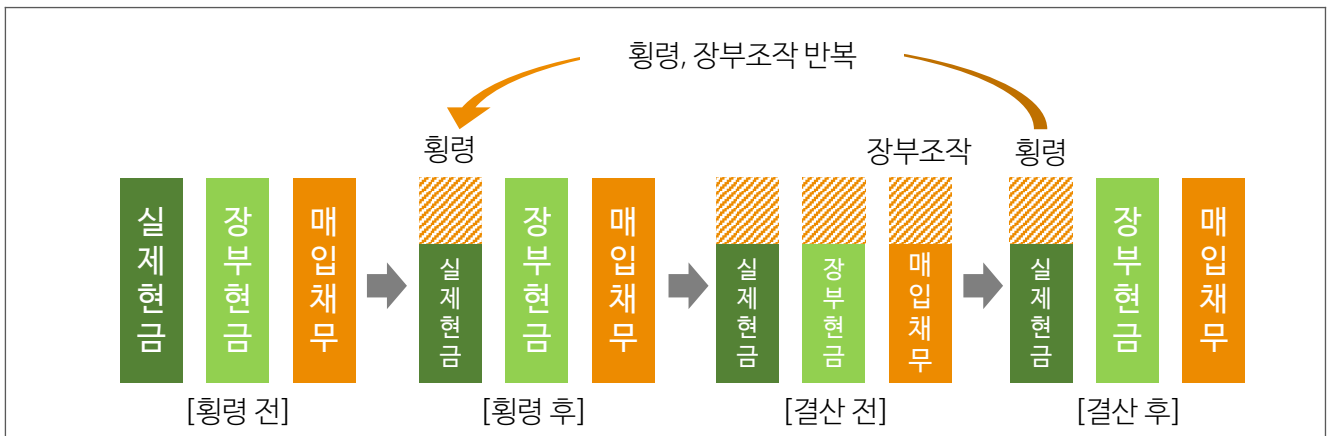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1)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 조작(A사)

-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김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하여,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함
  - 결산 시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였으나,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횡령사실을 자백함

< 그림 2 > 매입채무 조작을 통한 횡령 방식



< 표 1 > A사 내부통제 취약점

구분	내용
승인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 입력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금 지급이 제한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무팀 직원이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 및 수정 가능</li> <li>- 재무팀 팀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는 권한 보유</li> </ul> </li> </ul>
업무분리·교체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장 미비, 1인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과장은 혼자서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하였고 전표 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함</li> </ul> </li> </ul>
점검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 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하여야하나 동 절차 미수행</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2)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B사)

- B사 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이체한 후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이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함
  -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가 현금을 정상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이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함
  - 이팀장은 동 사건 발생 이전에도 부적격 비용처리, 유용 등으로 회사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회사는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이팀장의 직무를 교체하지 않음

< 표 2 > B사 내부통제 취약점

구분	내용
승인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팀장이 공인인증서, OTP를 통해 담당임원 등 상급자 승인 및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 뱅킹 이체·출금 가능</li> <li>- 공인인증서, OTP를 보관자 분리 없이 재무팀장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li> <li>- 신규계좌개설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없고, 개설된 계좌를 ERP, 펌뱅킹 시스템에 등록하는 통제절차도 부재</li> </ul>
업무분리·교체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팀장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표관리 등 회계업무 권한도 부여받아 직접 회계기록을 조작</li> </ul>
점검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사용시 신청서 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절차가 부재하여, 이팀장이 횡령에 사용할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 가능하도록 노출</li> <li>- 승인권자가 자금일보를 형식적으로만 결재하고 잔액을 전산자료(은행 펌뱅킹 화면)와 대사하는 절차 누락</li> </ul>
내부감사 부실 - 위반담당자 미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이팀장이 과거 자금관리내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내부징계 처분만 하고 담당자 미교체</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3)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C사)

- C사 경리팀 직원 강부장은 대출 실행은 내규 상 대표이사 결재사안이나 병부장은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차입신청서(사용인감을 날인한 상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결재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함
- 강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여 횡령사실을 은폐하였음
  - 강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하여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함
  -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강부장은 무단 결근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잠적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을 인지함

< 표 3> C사 내부통제 취약점

구분	내용
승인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는 권한 보유</li> <li>- 인터넷뱅킹 신청 승인절차가 없고 용도·이체한도도 미확인</li> </ul>
업무분리·교체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뱅킹용 OTP 및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분리하지 않아 강부장이 OTP·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입으로 입금된 현금을 본인계좌로 통제절차 없이 송금</li> </ul>
점검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담당이사·대표이사는 월별로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 예금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숫자만 확인하고 통장 실물 등 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 적발에 실패</li> </ul>
내부감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제로는 내부감사 관련업무를 감사가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내부감사기능 부재</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회사 유의사항

&lt; 표 4 &gt; 회사 유의사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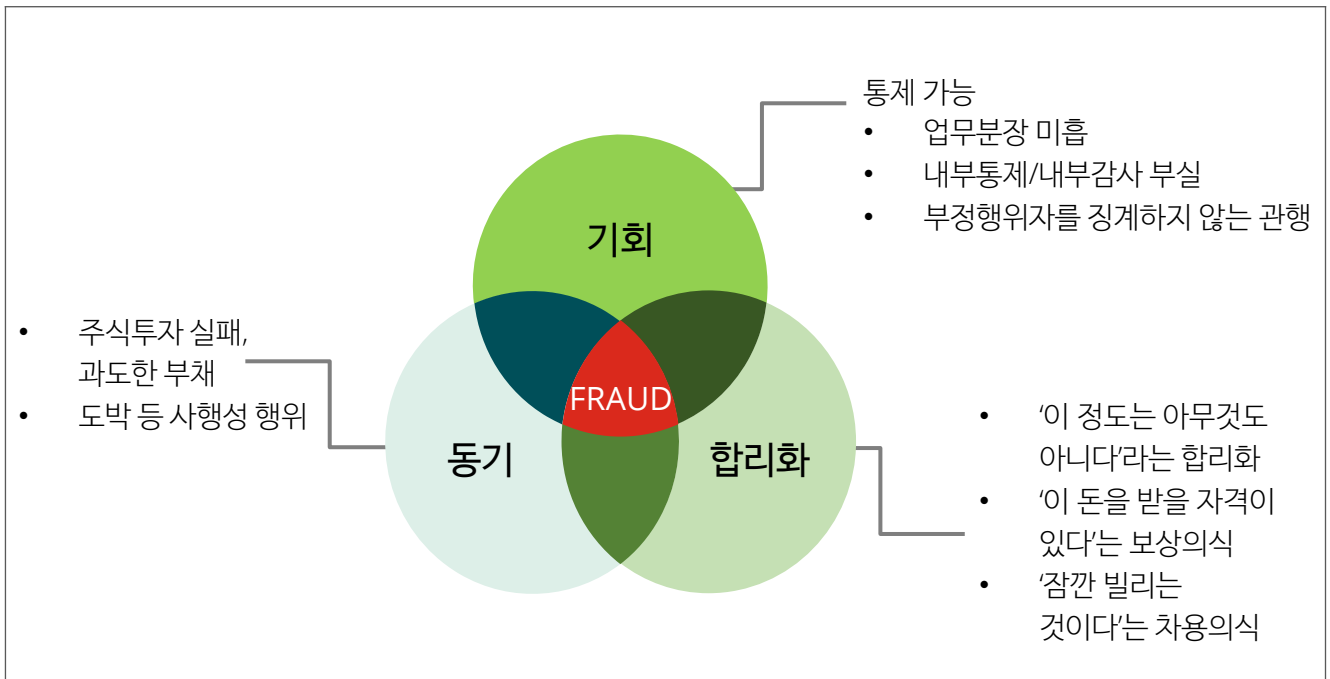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승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 마련</li> <li>불가피하게 미등록계좌에 이체한 경우 반드시 사후승인절차 구비</li> <li>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CFO의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li> </ul> </li> </ul>
업무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 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반드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토록 업무분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의 전표 승인절차 구축</li> <li>지적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직원이 횡령 후 전표입력을 통해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혹은 매입채무 지급액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횡령사실 은폐</li> </ul> </li> </ul>
업무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하여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li> <li>지적사례 모두 특정 직원이 장기간(최소 5년 이상) 자금업무담당</li> </ul> </li> </ul>
잔고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과 통장잔고 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li> <li>회사 장부와 잔액증명서(외부증빙) 및 펌뱅킹 화면 등을 반드시 대사</li> </ul> </li> </ul>
보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 법인카드, 인감, OTP(공인인증서) 등 중요서류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li> </ul> </li> </ul>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 등 업무담당이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 구축</li> </ul> </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부정 트라이앵글 이론에 따르면 기회·동기·합리화 3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부정이 발생함
  - 회사가 동기를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기회' 발생을 제거함으로써 횡령 예방 가능

< 그림 3 > 부정 트라이앵글 이론



#### 향후 계획

-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 예정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FY2023부터 본격 감리대상임



##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sup>1)</sup>

#### 요약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 KSSB 공시 초안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세 가지로 구성됨
- 한국회계기준원은 4개월간('24.5.1.~'24.8.31.)의 의견조회기간 이후에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임

#### 배경

-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EU는 '23.1.6.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를 발효하여 그 표준보고양식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최종본(첫번째 세트)를 EU 내 법적 기준으로 채택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sup>2)</sup>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은 '24.3.6. 통과되었음<sup>3)</sup>
  - 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 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함<sup>4)</sup>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는 '24.4.30.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함

1)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4.04.30

2) 한국회계기준원, 「ESRS 첫 번째 세트 주요 내용 소개」, 2024.02

3)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4.03.06

4) 한국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24.04.12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lt;표 1&gt; 관할권별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요약 표

국가	관할당국	기준개발			공시 채널	적용대상	보고시기	인증
		제정 기구	개발현황	향후일정				
EU	EC	EFRAG	ESRS 1 <sup>st</sup> 세트 채택 (‘23.7.31.)	SME 기준· 산업별 기준· 비EU 기준 (~‘24년, ‘26년)	법정 공시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 기업	‘25년 (FY24)	제한적 인증부터
일본	FSA	SSBJ	ED 의견수렴 (~‘24.7.)	기준 발표 (‘25.3.)		모든 프라임 상장기업	‘27년 (FYB26)	인증
미국	SEC	SEC	최종안 승인 (‘24.3.6.)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 발표		모든 공개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부터
캐나다	CSA	CSSB	ED 의견수렴 (~‘24.6.)	기준발표 (‘24.4Q)		증권발행자	‘26년 (FY25)	-
호주	재무부	AASB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 (‘24.6.)		기업법 2M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
영국	DBT	DBT	ISSB기준도입 의견수렴종료	기준 발표 (‘24.7.)		-	‘26년 (FY25)	-
중국	증권감독관 리위원회	본토 거래소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 (미정)		거래소 공시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	‘26년 (FYE25)
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SGX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 (미정)	상장기업· 대비상장사		‘26년 (FY25)	제한적 인증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제정 경과

-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동향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함
- 주요국의 공시기준 제정 관련 최신 동향 모니터링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간담회와 기준원 내에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표 2> 국제동향 분석 및 이해관계자 논의 내용

구분	내용
국제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지속가능성기준자문기구(SSAF),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IFASS),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 등 국제 회의 참여</li> <li>• 유럽, 일본, 호주, 홍콩 등의 해외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와 제정 동향 논의</li> <li>•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회의 내용 모니터링</li> <li>• ISSB 위원장·부위원장 초청 공시기준 세미나, 미국 SEC, EU EFRAG 및 일본 SSBJ 초청 세미나 등 개최</li> </ul>
이해관계자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간담회와 기준원 내에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li> <li>• 투자자 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기준(안)의 정보 유용성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의 핵심 이해관계자(경제단체, 투자자, 민단 전문가 등)로 구성</li> </ul> </li> <li>•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242개사)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총 21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시기준(안)의 기업 수용가능성에 대해 논의</li> <li>• 유관기관, 법령 전문가, 학계 등과 공시기준(안)의 제정원칙,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li> <li>•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공시가 권유되는 항목들을 식별 및 반영</li> </ul>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제정 원칙

- 국제 적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함
  - 1) 국제 적합성
    -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EU·美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 등)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함
  - 2) 정보 유용성
    -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함
  - 3) 기업의 수용가능성
    - 국내 산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완화 방안을 고려하였음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 공시기준 구성
  -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됨

<표 3> 공시기준 구성 내용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공개 초안 주요 내용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

- 공시원칙을 설명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내용 표시 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 전망(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및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표 4> 제1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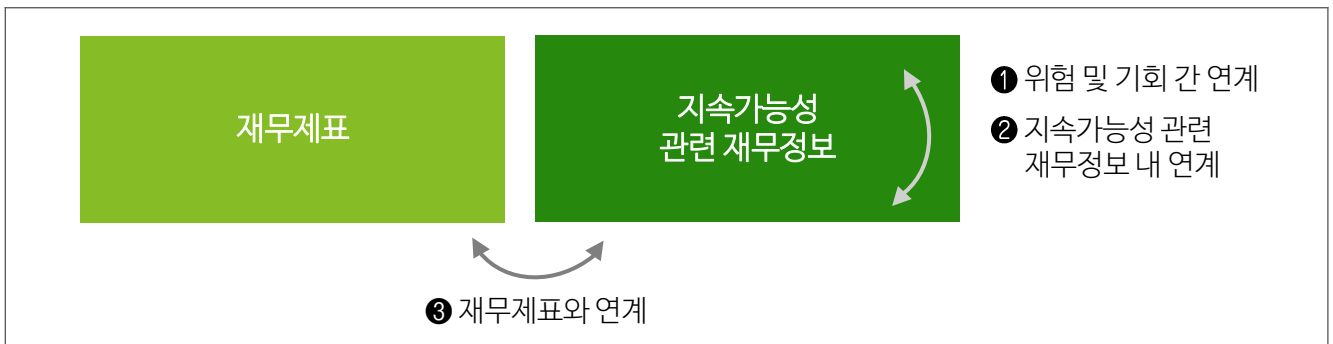
구분	내용	
개념적 기반	공정한 표시	• 목적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하게) 표현
	중요성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 • 중요한 정보는 정보가 누락, 오기 또는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
	중요한 정보의 식별	• 정보 이용자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평가
	통합 및 세분화	•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분화하여 공시
핵심요소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대상은 재무제표 공시의 대상과 동일해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간 연계성, ②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 연계성 및 ③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가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가정은 가능한 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것과 일관되고,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를 사용해야 함

<그림 1> 연계된 정보



- 공시기준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표 5> 일반 요구사항

구분	내용
비교정보	•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준수 문구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기재
기후 외 사안 공시	•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 요소에 대한 공시사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시
판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
측정불확실성	•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 공시
오류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보고된 오류와 관련된 비교정보를 재작성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공개초안을 적용함
  -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예: 홍수·가뭄)과 전환위험(예: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 모두와 관련이 있음
  -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뜻함
- 공시기준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표 6> 제2호 주요 공시사항

구분		내용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의 운영 규정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
	경영진의 역할	• 기후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이 특정 직책 또는 위원회에 위임되는지, 위임된다면 그러한 직책 또는 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해당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기후 회복력	•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관한 정보로, 시나리오 분석 등이 해당
	현재 및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당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
지표 및 목표	산업전반 지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통으로 공시하여야 할 7가지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탄소 가격 등이 해당
	산업기반 지표	• 특정 산업의 사업모형 및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기업은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기후 관련 목표	•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 혹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를 공시
위험관리	위험프로세스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다음의 사항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 제101호 공개초안의 적용여부와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 5월 1일~9월 31일, 5개월간 의견조회기간 이후에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임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약 200여개 상장사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음
- 5개월간의 의견조회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도 진행할 예정임
  -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자문위원회 및 자문위 내 소위원회를 통한 자문 의견수렴
  - 기준원 내 전문위원회인 투자자 전문위원회, 법령정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KAI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
- 최종 기준 발표 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자료(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중요성 판단 등)를 제공할 예정임





###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